

# 무대시설 안전진단 업무 절차서

**Procedure for Safety Inspection of Stage Facility**

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



# 목 차

1 목적 및 적용범위

2 용어의 정의

3 검사 인력

4 고객서비스 제공

5 검사 수수료

6 무대시설 검사

7 검사장비 관리

8 관련문서

## **1 목적 및 적용범위**

### **1.1 목적**

본 절차서는 에스이테크컨설팅(이하 "진단기관"이라 한다)에서 수행하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# **1.2 적용범위**

본 절차서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.

## **2 용어의 정의**

본 절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) 무대시설 :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·기구를 말한다.
- 2) 무대기계·기구 : 공연활동을 돋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총칭하여 말한다.
- 3) 상부무대시설 :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위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·기구를 말한다.
- 4) 하부무대시설 :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아래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·기구를 말한다.
- 5) 무대시설안전진단 :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무대기계·기구에 대하여 설계검토·등록 전 안전검사·정기 안전검사·정밀안전진단·자체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를 말한다.

## **3 검사 인력**

### **3.1 인력 구성**

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인력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기계분야 자격자 5명(기술사 1명 포함)
- 전기분야 자격자 3명
- 금속분야 자격자 2명

### **3.2 안전진단팀장**

해당 분야별 직무분장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

### **3.3 기술책임자**

기술책임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.

- 검사결과 검토 및 보고서의 승인, 서명 권한이 있으며, 통상적으로 안전진단팀장이 자격을 갖추어서 수행한다.
- 기술책임자(부)는 기술책임자(정)을 보좌하여 무대시설 검사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술책임자(정)의 부재 시 이를 대리한다.

### **3.4 실무자**

실무자는 안전진단팀장을 보좌하고 고객에게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, 다음 사항의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- 개인별 업무 분장에 따라 시험의 총괄 수행
- 검사결과에 대한 1차적인 책임
- 검사장비 및 보조 장치의 유지관리
- 검사관련 자료 및 보고서 관리

## **4 고객서비스 제공**

### **4.1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**

- 1) 실무자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업무수행 상황 및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.
- 2) 실무자는 계약, 업무수행 및 수행결과를 근거로 고객에게 권고 등을 할 경우에는 고객이 긴장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.
- 3) 실무자는 업무가 지연되어 수행되는 경우, 고객에게 문자, 메일 등을 이용하여 업무 지연 상황 및 지연 일자 등을 통보한다.

### **4.2 고객의 의견수렴**

안전진단팀장은 고객 만족도조사 등 체계적인 방식을 통하여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활용한다.

## **5 검사 수수료**

진단기관의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정한 수수료를 따른다.

## **6 무대시설 검사**

### **6.1 일반사항**

안전진단팀장은 해당 업무절차서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실시한다.

## 6.2 검사 절차

무대시설 안전진단 검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

## 6.3 검사 신청

- 1) 무대시설 안전진단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고객이 안전진단 문의를 요청하는 경우, 실무자는 접수 및 안전진단 절차 등 고객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다.
- 2) 고객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기관에 제출하고 실무자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수료 및 안전진단 계획을 고객에게 안내한다.
- 3) 기술책임자는 안전진단 업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계약 단계별 해당 계약을 검토한다

## 6.4 검사 실시

- 1) 실무자는 검사 계획에 따라 업무분담내용을 파악하고 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및 안전장구 등을 준비하여 검사에 임한다.
- 2) 실무자는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6-24호)과 고객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검사를 수행한다.
- 3) 실무자는 현장검사 완료 후 안전진단 결과를 정리하여 공연장관리자에게 지적사항 및 조치방안 등을 설명하고 검사보고서 작성 시 이를 반영한다.

## 6.5 검사 결과 보고

- 1) 실무자는 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의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 결과보고서 초안 1부를 작성하여 안전진단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- 2) 실무자는 안전진단팀장의 결재를 받은 결과보고서를 3부 복사·제본하여 제출기한 내에 공연장관리자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실무자는 다음 기한을 준수하여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고객에게 제출한다. 단, 고객과 진단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따른다.

안전진단 대상 구동식 무대시설 수	업무완료기한(결과보고서 제출 기준)
0개	현장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(협의가능)
1 ~ 19개	현장검사 완료 후 20일 이내(협의가능)
20 ~ 39개	현장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(협의가능)
40개 이상	고객과의 협의로 결정

- 4) 실무자는 이미 발행한 보고서를 수정하는 경우 원본을 회수한 후 완전한 신규 보고서로 발급한다.
- 6) 고객은 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결과보고서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팀장은 고객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, 진단기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## 7 검사장비 관리

### 7.1 일반사항

- 1) 기술책임자는 정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장비관리담당자 및 보조자를 임명한다.
- 2) 장비관리담당자는 검사 장비의 정밀정확도 유지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장비 사용 후 정해진 위치에 보관하며,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한다.

### 7.2 교정

- 1) 장비관리담당자는 KOLAS-G-103의 교정주기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진단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 장비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교정한다.
- 2) 장비관리담당자는 모든 검사 장비의 교정 결과에 대해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.

### 7.3 점검

- 1) 장비관리담당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 검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점검한다.
- 2) 기술책임자는 장비의 특성과 사용빈도, 보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해당 장비의 점검을 지시하고 장비관리담당자는 지시에 따라 해당 장비를 점검한다.
- 3) 장비관리담당자는 모든 장비의 점검 방법,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장비관리대장에 기록한다.

## 8 관련문서

- 1) 공연법 및 하위법령
- 2)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